

표준공장 3호동(1·2·4·5층 일부) 입주 모집 공고 (2차)

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3호동(1·2·4·5층 일부)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013년 5월 23일

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

□ 표준공장 3호동(1·2·4·5층 일부) 개요

- 위 치 :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211
(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10-47)
- * 붙임 1 : 표준공장 3호동 위치도
- 임대면적 : 11,784.91㎡(전용면적 9,168.07㎡, 공용면적 2,616.84㎡)
- 시행자(관리권자) : 산업통상자원부장관(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)

□ 규모 및 임대금액

구분 (용도)	전용면적(㎡) (모집 대상)	월 임대료(㎡당) *부가세 별도 ※보증금: 월 임대료×6	층고	허용 하중 (ton/m)	화물용 엘리베이터 규격	최소 임대면적 (업체당)
1층 (공장)	1,355.37	1,465원	6.0m	1.5	각 층 4대 (4ton, 30m/min)	2,100㎡
2층 (사무 등)	192.00	1,465원	6.0m	1.0		
4층 (공장)	3,350.00	781원	6.6m	1.0		
5층 (공장)	4,270.70	390원	6.0m	1.0		
계	9,168.07					

※ 임대면적 : 전용면적+공용면적* (* 공용면적 : 전용면적의 28.543%)

※ 상기 임대료는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-378호('11.7.26)에 의거 2013.7.31일까지 적용하며, 2013.8.1일 이후 임대료는 별도 공고함

□ 입주자격

- 수출을 주목적*으로 하거나, 외국인투자기업**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*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: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

** 외국인투자기업 :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

※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결격사유(금치산자 등)에 해당 되는 자는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음

□ 입주제한 업종

- 「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제조업종 등
- 공해발생업종 (소음, 진동, 대기, 폐수, 폐기물 등)

□ 우선 유치 및 가점 기준

○ 우선 유치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(최우선 유치 예정)

○ 가점 기준

- 수출기여 외국인투자기업

당 지역 주요 설립 목적인 외국인투자의 유치, 수출 증진에 부합하는 수출비중이 35% 이상인 *수출기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우선 유치

* 수출기여 기준 :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

- 단위면적(m²)당 연간 수출액 2,000불(US) 이상인 기업

* 업체별 단위면적당 연간수출액 계산식

과거 3년의 기간 중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수출실적 / (희망 임대면적 × 0.8)

※ 유치기업수 및 기업별 최종 임대면적 · 입주위치는 업종, 수출금액 · 비중 및 외국인투자금액 · 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리원에서 최종 결정

※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경우, 사업장 활용도 등도 감안하여 입주대상 여부 결정

□ 입주업체 선정(입주허가) 절차

입주수요신청 → 입주기업체 선정 → 입주허가신청
→ 사업검토 → 입주허가 → 입주

1. 입주수요 신청

- 입주수요 신청기간 : '13. 6. 3(월) ~ 7. 5(금)
- 접수처 :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(3층)
(담당자 : 나경선 주무관 055) 294 - 2666, FAX : 055) 294 - 9614)
 - ※ 우리원 홈페이지(www.ftz.go.kr) 등에서 입주수요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
- 신청서류 : 입주수요신청서 1부(소정양식, 붙임 참조)
 - ※ '고도기술수반사업'으로 입주 희망하는 자는 관련 증빙 서류 구비 위해 수요신청 기한 10일 연장 가능

2. 입주기업체 선정시기(예정) : '13. 7. 26(금)

- ※ 선정된 기업에게만 별도 통보

3. 입주허가 신청

- 입주허가 신청기한 : 선정일로부터 40일 이내
- 접수처 :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(3층)
(담당자 : 나경선 주무관 055) 294 - 2666, FAX 055) 294 - 9614)
 - ※ 우리원 홈페이지(www.ftz.go.kr)에서 입주허가신청서 양식 등 다운로드 가능
- 신청 및 구비서류
 - 입주허가신청서 1부 - 사업계획서 1부
 -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

4. 입주허가

- 선정 기업은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입주허가 신청
-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입주자격, 업종, 입주면적, 사업계획서등 입주허가신청 사업내용을 검토
-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입주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개별통보

□ 입주업체 지원사항 (Incentive)

○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

- 국세 (법인세 또는 소득세, 배당금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)
 - 최초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%, 다음 2년간 50% 감면
- 지방세(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)
 - 15년간 전액면제

○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

-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에 의거 해당업체에 감면 가능
- 임대료 감면 조건 및 한도 (근거 :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-378호, '11.7.26)
 -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
 -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업종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
 - 무상제공 면적의 범위는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

○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보류

- 외국으로부터 시설재, 원재료 및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

○ 역외작업 허용

-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 가능 및 수출 가능 등

○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특례

- 모든 입주기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등
-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게는 취업보호대상자 등 고용의무 면제

□ 입주업체 준수사항

- 입주허가를 받은 기업체는 「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」 제13조 (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)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(매매계약 등의 체결 기간 등)의 규정에 의거,
 - 입주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 - 입주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시설설치를 완료하여야 함

□ 입주선정 업체 유의사항

- 입주선정된 업체가 입주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, 동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선정이 무효로 됨

□ 현장 설명 일시 : '13. 6. 11(화) 14시 (표준공장 3호동 북측 주차장 집결)

붙임 1. 표준공장 3호동 위치도 1부

2. 표준공장 3호동(1·2·4·5층) 입주수요신청서 1부. 끝.

붙임 1 표준공장 3호동 위치도



붙임 2

표준공장 3호동(1·2·4·5층 일부) 입주수요신청서

입주희망 업체명		대표자 성명	
사업자등록번호			
주소	본사	(전화:)	
	공장(또는사업장)	(전화:)	
현황	자본금	천원	투자금액
	외국인투자금액	천원	고용
		천원	명
		천\$	외국인투자비율
		%	투자국명
주 생 산 품	업종	*통계청 산업분류코드(5자리) 및 업종명	
	제품특징	생산품명	
우선 유치 기준	고도기술 수반사업	해당 기술 기재	
	수출기여 외투기업	* 수출기여 기준 :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5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	
※해당사만 작성	단위면적당 연간수출실적	* 업체 별 단위면적당 연간수출액 계산식 과거 3년의 기간 중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수출실적 / (희망 임대면적 × 0.8)	
'12년도 매출 실적	수출	천\$	내수
	매출합계	천\$	수출비중
		%	
'13년도 매출 계획	수출	천\$	내수
	매출합계	천\$	수출비중
		%	
연도별 계획	투자(천\$)	1차년도('13) :	2차년도('14) :
	매출(천\$)	1차년도('13) :	2차년도('14) :
	수출(천\$)	1차년도('13) :	2차년도('14) :
	추가고용(명)	1차년도('13) :	2차년도('14) :
		3차년도('15) :	
외국인투자유치 계획 및 기타			
희망 위치 및 임대면적(전용+공용)			
위와 같이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3호동(1·2·4·5층 일부) 입주기업체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수요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
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귀하			

※ 입주희망업체 담당자 성명(직위) : Tel : Fax :
 ※ 입주자격·우선유치 및 특별가점 기준 관련 증빙 서류 및 추가 설명자료 첨부 요망
 ※ 달러(US\$) 환산 기준 : '12년 실적) 1,127원/US\$, '13년 이후 계획) 1,080원/1US\$ 기준 작성